

진도군 고시 제2018 - 50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4일

진도군수



제1조 목 적

- ①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생활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광고물의 등장, 광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②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량, 유형, 크기, 배치 등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제시하여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 공간 창출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제2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전라남도 진도군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경관디자인거리, 아리랑거리사업구간 전역과 면소재지 및 밀집상가에 대하여 광고물 등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

- ① 진도읍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10개지역 / 121,555m²

1.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녹색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 구간

- (철마공원 ~ 남문사거리, 통샘거리 ~ 옥향식당) 16,075m²
2.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경관디자인거리 조성사업 구간
(큰샘사거리 ~ 클래프 ~ 광주약국,
철마오거리 ~ 클래프 ~ 우체국, 클래프 ~ 영락교회) 17,880m²
 3.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아리랑거리 조성사업 구간 53,900m²
(동외삼거리 ~ 조금사거리)
 4.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농협군지부 ~ 진도초등학교~ 큰샘사거리
: 3,000m²
 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교 ~ 조금사거리 ~ 대륙철강
: 4,100m²
 6.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문사거리 ~ 백두아파트 삼거리
: 17,500m²
 7. 진도읍 삼성사 ~ 사정2리 구)마을회관 : 1,300m²
 8. 진도농협 본점 ~ 한국전력 진도지사 : 3,300m²
 9. 교동3길 24 ~ 보은모텔 : 3,500m²
 10. 진도읍파출소 ~ 진도수산시장 : 1,000m²

② 면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6개지역 / 128,300m²

1.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금골리) 일원(16,000m²)

가. 진도대로 : 우체국~금골교차로	10,000m ²
나. 금골길 : 홍선당한양방~군내면 노인복지회관	6,000m ²
2. 진도군 고군면 석현리(오일시) 일원(16,600m²)

가. 오일시1길 : 오일시삼거리~진도동부라이온스클럽	5,000m ²
나. 오일시2길 : 고성삼거리~구백화물, 엑스포노래방~일윤당구장	10,000m ²
다. 로젠택배~고군우체국	1,600m ²
3.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일원(25,800m²)

가. 돈지1길 : 9번슈퍼~의신보건지소	9,200m ²
나. 돈지2길 : 수정다방~믿음건강원, 의신중기~도향횃집	900m ²
다. 돈지3길 : 의신농기계~현대방앗간	4,000m ²
라. 진도대로 : 하나전기~허준카부분정비	11,700m ²
4.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일원(22,700m ²)	
가. 석교길 : 태창중기~아리랑마트	6,100m ²
나. 십일시길 : 태현수산~석교중학교, 하나로마트~GS칼텍스 남선방앗간↔국빈장	13,000m ²
다. 십일시시장길 : 임회종합마트 ↔ 십일시장	3,600m ²
5.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일원(35,200m ²)	
가. 지산민속로 : 중앙마트 ~ 남강식당	5,400m ²
나. 지산로 : 모태부러 소주방 ~ 만물공업사 등	8,500m ²
다. 인지인천1길 : 지산건재사~지산파출소~남강식당	3,900m ²
라. 인지인천2길 : 고기사랑~ OK식당	2,400m ²
마. 인지독치1길 : 마을주도로 및 독치마을회관 주변	15,000m ²
6.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일원(12,000m ²)	
가. 어류포길 : 산해장 ↔ 다도해상국립공원 조도분소	2,000m ²
나. 창유1길 : 협동유통 ↔ 삼거리식육점식당	4,000m ²
다. 창유2길 : 팔팔상회 ↔ 조도보건지소	3,000m ²
라. 창리길 : 성현중화요리 ↔ 구구다방	3,000m ²

제3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수량

1. 1개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가. 관공서, 의료기관에서의 표시

- 나. 5층 이상의 건물에 연립형으로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 다.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의 벽면이용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 라. 약국(✚, 약 등) 및 미·이용업소(회전사인)의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 마. 건물부지 밖에 농수산물시장, 재래시장 등의 진입로 및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지주이용 간판.
- 바.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골목 안에 위치한 업소
- 사. 창문이용광고물 중 판이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② 표시금지 광고물

1.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다만, 입구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 제외)
2. 공연간판(다만, 건물 부지 내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3. 옥상간판(다만, 2층 이하 건물 중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나 공공목적광고물, 병·의원, 숙박시설, 목욕탕, 사우나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4. 돌출간판(다만, 약국 및 미·이용업소의 표시등, 벽면이용간판을 표시하지 못하는 건물의 4층 이상에 이주한 업소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전단, 벽보, 애드벌룬, 선전탑, 아치광고물. 다만, 벽보, 애드벌룬과 선전탑의 경우 공공목적광고물일 경우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다.

③ 간판의 색채

1. 바탕색은 주변 건물과 환경에 조화되도록 건물 계통색을 사용해야 한다.

④ 간판의 형태 및 규모

1.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네온·전광판 등의 점멸방법은 의료기관 또는 상업지역에서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표시가능
3. 기존의 광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축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게시틀을 설치한다.(벽면이용·돌출 간판 게시틀 설치)

⑤ 간판의 문자

1.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의 경우 주변 건물과 환경에 조화로우려 할 경우 허용하고 기업 CIP(기업이미지 통합계획)가 아닌 경우는 한글과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작자명 표시

1. 광고물 우측 하단에 가로크기 10cm, 세로크기 5cm 이내로 제작자명 표시

제4조(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① 수량은 1개 업소에 1개의 벽면이용간판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는 1개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유연성 원단(플렉스 등)을 사용한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건물 정면의 3층 이하에만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의 경우는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다
- ③ 동일 건물의 간판 설치 위치는 같은 층의 간판들과 일렬로 정렬 하되 세로폭이 서로 같아야 한다.
- ④ 규격 및 설치방법
 1. 판류형의 가로크기는 해당 업소의 전면폭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폭은 층간폭 이내로 한다.

2. 입체형의 가로크기는 해당 업소의 전면폭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폭은 0.8m 이내로 설치하되 층간폭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 4층 이상의 건물에는 해당 건물명, 건물 사용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 상단 중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이 가능하다. 단, 간판 가로크기는 건물 상단 전면폭의 2/3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4.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에는 간판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공익목적에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수 량

1. 1개 업소는 하나의 돌출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건물의 4층 이상에 입주한 업소에 한한다.
2. 건물의 3층 이하에 위치한 업소는 돌출간판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의료시설 및 약국은 가로 0.9m, 세로 0.9m 이내로, 이·미용업소 표시등은 세로높이 1.2m, 지름 0.3m이내로 보행자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픽토그램형(+, 약, 표시 등)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3. 소형돌출간판은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총 수량에서 제외한다.

② 위 치

1. 4층 이상의 건물에 한하여 간판의 최상단은 벽면 높이 이하로 하되 건물의 층수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층 이상 10층

이하에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전면 폭에 관계없이 건물 좌측 또는 우측 1개소에 1줄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단, 이웃 건물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해 간섭에 따른 분쟁을 없애며, 건물 전면 폭이 15m이상이고 연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좌우측에 각각 1줄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규격 및 설치방법

1.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m(게시틀 포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길이는 2m 이내로 설치하고 간판의 두께는 0.3m 이내로 한다.
2. 표기면적은 간판면적의 80% 이내로 하며, 주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가로크기는 간판 가로크기의 75%이내, 그 외 보조표기 내용의 면적은 간판면적의 15% 이내로 한다.
3.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는 돌출폭, 두께, 가로폭 등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4.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해안지역의 강한 바람에 대비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소형돌출간판의 형태는 업소를 상징하는 것을 형상화 하여 조형적으로 표현해야하며 규격은 최대 0.36㎡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예) 가로1.2m×세로 0.3m 또는 0.6m×0.6m 로 표시

제6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 설치 가능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층 이상 건물에 한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형식으로 된 하나의 간판만 설치하는 경우(이 경우 간판의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2.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이 모여있는 지역의 진입로 및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지주이용간판은 설치 가능(이 경우 간판의 총

수량에서 제외한다.)

② 위치

1. 지주나 간판 구조물의 끝단이 보도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규격 및 설치방법

1. 지면으로부터 5m이내, 1면의 최대면적 6㎡ 이내(가림 간판은 따로 정함), 총 면적 24㎡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2. 제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으로 설치 가능하고 1면의 넓이는 3㎡ 이내로 하며 총 면적은 12㎡ 이내로 한다.
3. 네온,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의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목적광고물, 병·의원, 숙박시설, 목욕탕의 관련법령 규정에 정한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2층 이하 건물에 한하여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목적의 공연의 경우
2. 건물 부지내에 설치하는 경우

제9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지정계시대와 벽면이용 게시만 게시할 수 있

다.

1. 지정게시대

가. 지정게시대는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7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6개 이내의 현수막 게시틀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군수가 대상지를 선정하여 광고물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가 확정한다.

라. 규격은 가로 6m, 세로 0.7m 이내로 한다.

2. 벽면이용게시

가. 벽면이용게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물 전체에 2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해야 한다.

나. 벽면이용게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시 벽면이용게시대의 크기, 형태, 색채, 디자인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 게시시설의 길이는 해당 건물 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60%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80%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벽면이용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은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3. 현수막의 색채·형태 및 규모

가. 바탕색 및 글자색은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색상과 빨강·파랑·노랑·녹색 및 검정색의 경우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할

수 없고, 빨강과 검정색의 경우 표시면적의 5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표기면적은 현수막 면적의 80% 이내로 하며, 주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가로크기는 현수막 가로크기의 75% 이내, 그 외 보조표기내용의 면적은 현수막 면적의 15% 이내로 한다.

제10조(애드벌룬, 선전탑, 아치광고물, 벽보 및 전단의 표시방법)

- ① 아치광고물, 전단의 표시를 금지한다.
- ② 벽보, 애드벌룬 및 선전탑의 표시를 금지한다.(다만, 공익목적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 ① 창문이용 광고물 중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은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을 창문 또는 출입문의 1/2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간판 총수량 미포함)
- ②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표시할 수 있다.(간판 총수량에 포함)

제12조(전기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형광도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 ③ 의료기관 또는 상업지역에서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공공목적 광고물)

- ① 국가 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는 위 현수막 표시방법 지정게시대 설치 방법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등의 건물벽면을 이용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 6미터, 세로 10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현수막 게시틀(세로형)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광고물 심의 등)

- ① 법, 시행령, 조례, 가이드라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를 제한한다.
- ④ 심의시 제출서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도안에는 도안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도안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광고물 설치계획 수립)

- ① 미관향상을 위하여 특정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 원색도안,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물 사용검사 신청시 광고물 담당부

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3조를 따른다.)

- ② 건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상 법에 의한 옥외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표시제한 고시내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
- ③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택지개발지구는 이 고시문에 따라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조치)

이 고시 규정사항 이외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적용의 특례)

이 고시를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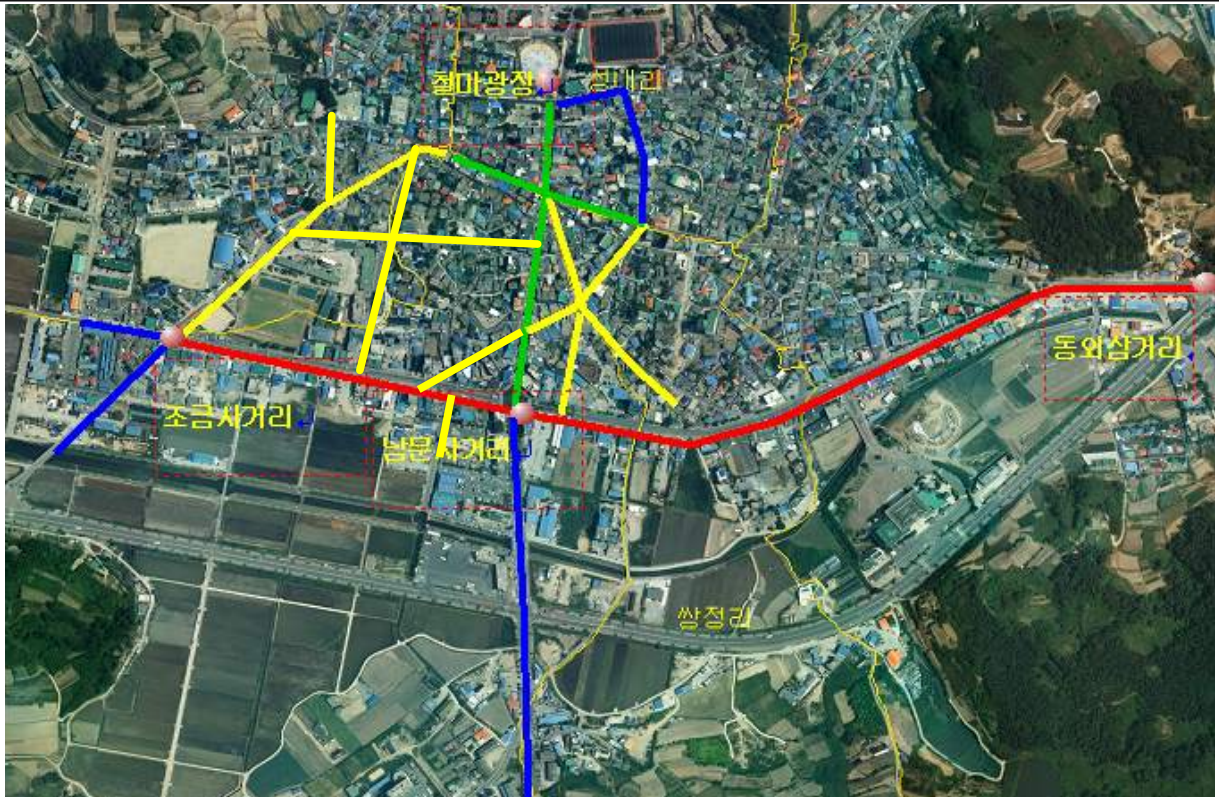
부칙(진도군 고시 2018-50, 2018.7.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전의 '진도군 고시 제2013-78호 및 제2015-12호'는 이 고시가 대체하며, 이전의 고시에 따른 행위 등은 이 고시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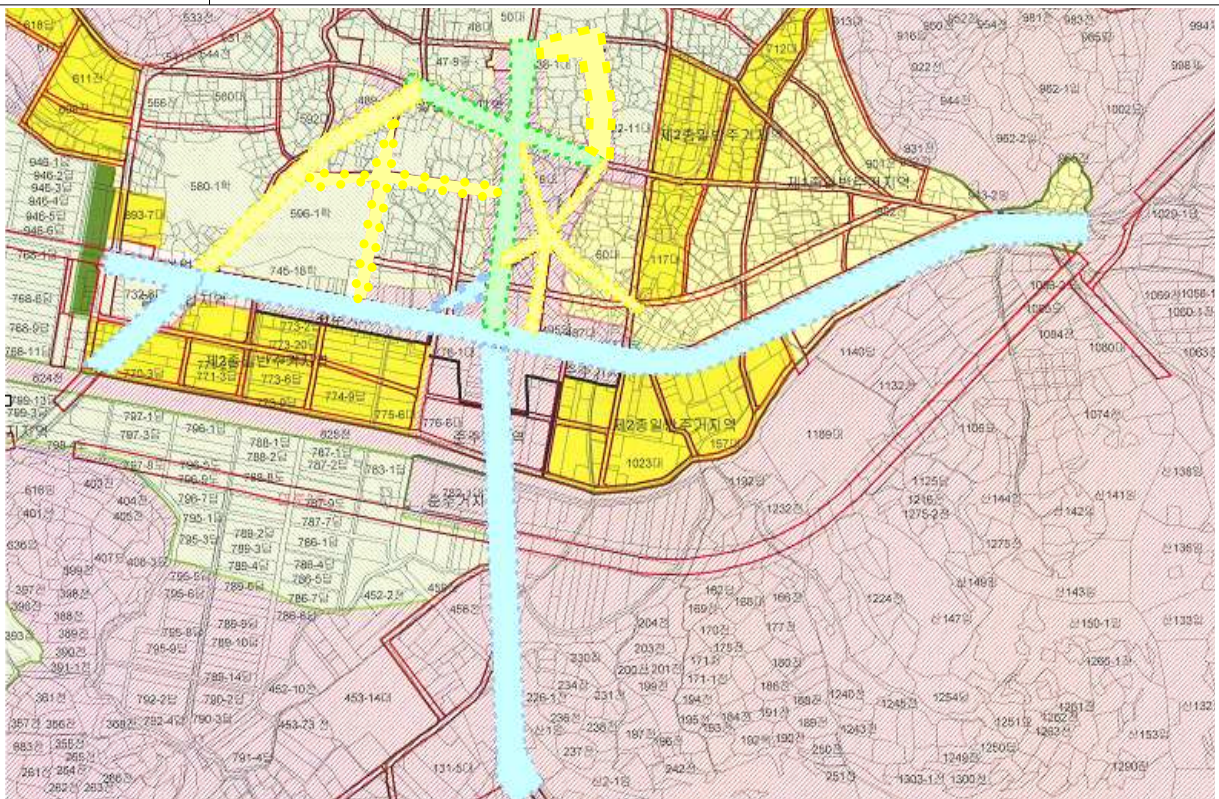
제3조(준용기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제한 및 완화한 사항 이외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라남도 조례, 진도군 조례에 따른다.

■ 위치도(진도읍)



사진설명

위성위치도(아리랑거리, 녹색디자인거리, 경관디자인거리)



사진설명

용도지역 도면(아리랑거리, 녹색디자인거리, 경관디자인거리)

■ 위치도(의신면 돈지리, 임회면 석교리)



사진 설명

위성위치도(의신면 돈지리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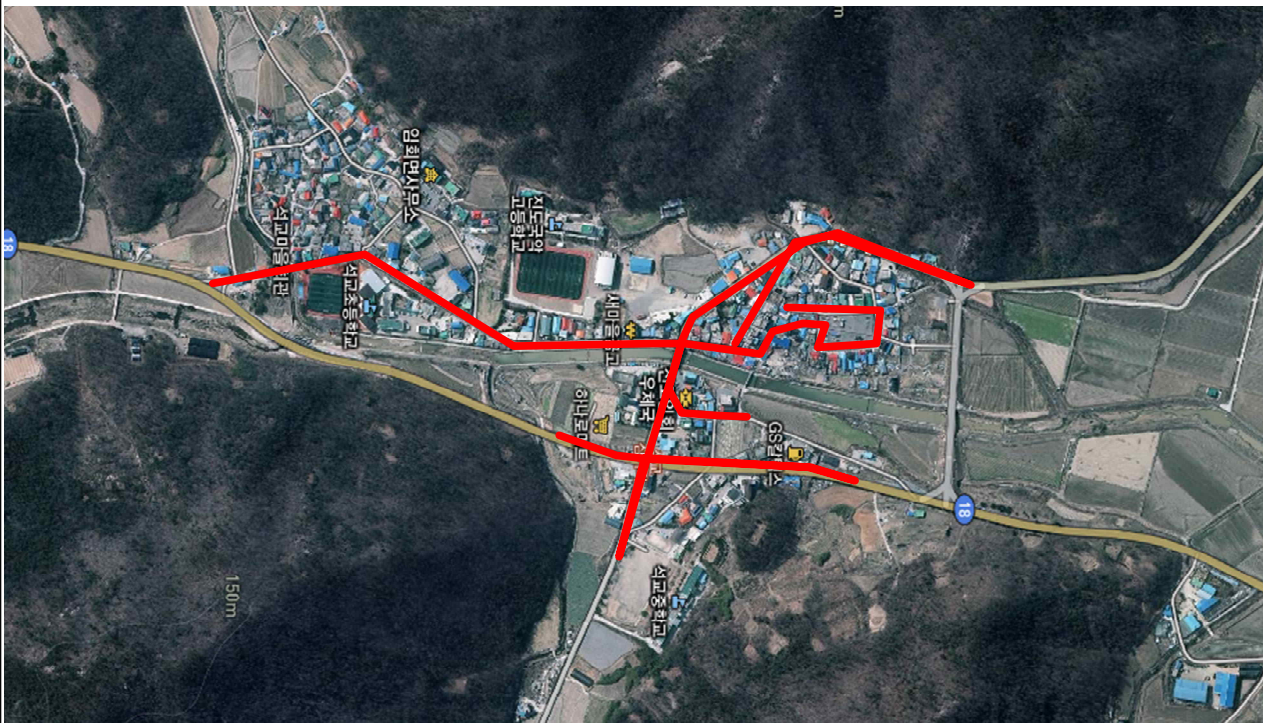


사진 설명

위성위치도(임회면 석교리 일원)

■ 위치도(지산면 인지리, 조도면 창유리)



사진설명

위성위치도(지산면 인지리 일원)



사진설명

위성위치도(조도면 창유리 일원)

■ 위치도(조도면 창유리)



사진 설명

위성위치도(조도면 창유리 일원)